

1. 개정이유

재활용원료 사용시 의무량 감경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원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인정 기준 정의(안 제14조제2항 신설)

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에 관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임을 구체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”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제품 · 포장재의 출고량 자 료제출) (생 략)	제14조(제품 · 포장재의 출고량 자 료제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<u>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”란</u> <u>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</u>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</u> <u>급하는 원료로서 환경부장관이</u> <u>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</u> <u>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</u> <u>재활용한 원료를 말한다.</u>